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11. 20 선고 2024나1029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11. 20 선고 2024나10295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1. 30 선고 2022가단13750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안 담당변호사 명광재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엘 담당변호사 하혜용

변론 종결2024. 10. 2.

판결 선고2024. 11. 20.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1. 30. 선고 2022가단137503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9. 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20,614,80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614,8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 'I의'를 'C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첫 번째 행 '망 D의'부터 같은 면 제6행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망 D은 2009. 7. 13.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그 당시는 피고와 망 D이 이미 약 46년간을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여 온 시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무렵 망 D과 피고 사이의 예금거래내역을 보면, 피고가 망 D에게 이체한 금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 구입을 위해 대출한 것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H에 대한 대출금을 갚아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도 피고가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아파트는 망 D이 사망할 당시 피고가 실질적으로 그 형성·유지에 기여하여 온 부부공동재산으로 평가되는 점』

-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③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C의 상속지분뿐만 아니라 그 외 3명의 자녀들의 상속지분까지 전부 피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와 망 D이 함께 이룩하여 온 부부공동재산이자 1943년생인 피고가 앞으로 여생을 살아갈 주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의 자녀들인 C 등이 피고가 안정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피고로 하여금 소유권을 온전하게 취득하도록 한 취지라고 이해되는 점,

④ C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가 단독 소유하는 것에 동의하였는데, 노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배우자가 거주하던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자녀들이 상속재산협의분할 형태로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효사상과 도덕관념에도 부합되는바, 이러한 유형의 재산분할협의에서 수익자인 부모에 대한 악의의 인정은 지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 '③'을 '⑤'로 고치고, 같은 면 제3,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⑥ 피고가 2011. 6. 9., 2011. 7. 25., 2013. 1. 30. 2014. 10. 2. 원고와 C 사이의 소송관련 서류를 송달받은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해당 소송관련 서류의 내용까지 인지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데다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위 소송관련 서류들을 마지막으로 송달받은 때로부터 무려 약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으므로, 그때까지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점까지 인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기우종

판사이형원

판사신옥영

별지